

심사보고서

의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36호
심사일자	2026. 6. 16.



위원장 신영재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436
------	-----

2026년 6월 16일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5. 28. 송파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6. 6. 1.
다. 상정일자: 2026. 6. 16. 제332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계획의 수립, 구매 촉진 (안 제5조~제7조)
- 홍보 및 표창(안 제8조~제9조)

다. 참고사항

- 관련법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사전협의: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여성보육과(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심사(기획예산과)
- 기 타
 - 1) 입법예고: 2026. 4. 16. ~ 2026. 5. 6. (20일간)
 -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제정문안, 관계법령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진미숙)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 2026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6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 **안 제1조(목적)**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 ▶ **안 제2조(정의)**에서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규정하고,
-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하였으며,
- ▶ **안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송파구 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와 송파구의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명시하였고,
- ▶ **안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서는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구매 계획,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구매목표비율은 총구매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명시하였으며,
- ▶ **안 제7조(우선구매 촉진 등)제1항**에서 안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송파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 **안 제8조(홍보)** 및 **안 제9조(표창)**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 구매 인식 확산 등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는 근거와 우선구매 촉진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등에 대한 표창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므로, 향후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근로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대상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홍보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려는 내용으로,
-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림.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전정 위원

- 지난해 우리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0.81%로 법정 기준에 미달하였는데, 관내 생산시설의 판로확대를 위한 계획은?

【답변】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 사실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빵, 쿠키 등 종류가 제한되어 있어 소모 방안이 부족한 상황임. 장애인축제 때, 제품 전시 등 홍보한 바 있음.

【질의】 최옥주 위원

- 안 제7조제1항에서만 ‘중증’이 빠진 이유는?

【답변】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모두 포함하여 장애인생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명시한 사항임.

5. 심사결과: 원안가결